

의안번호	제 797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흙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8년 3월 14일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7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발 의 자 : 연철흙, 최광옥, 박봉순,
박한범, 이언구, 김영주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 수수료 삭제
- 법령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 안 별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범위) 조문 삭제 반영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보수업 → 승강기 유지관리업)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어 해당 수수료 삭제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시군 위임사무로 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징수 근거 없음
- 공유 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 삭제(별표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수수료 산정기준) 준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세정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를 “검사 등에”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증명등” 을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별표 4” 를 “별표 2”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2조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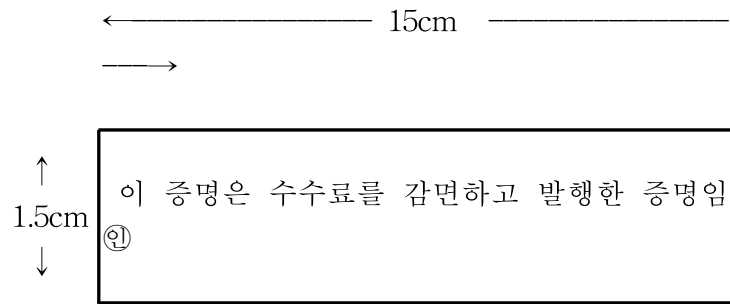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
4) 실적증명 (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나. 기타 제증명		
1) 원자재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1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350
3)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1건	1,000
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3)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6)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7)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1건	30,000
나) 상속 신고	1건	5,000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1건	5,000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가)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사)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자)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가)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신고	1건	5,000
나)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다. 건설관계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200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3)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마. 문화 공보관계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바. 체육시설업 관계		
1)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1건	100,000
2)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건	30,000
3)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
4)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5)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6)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1건	20,000
7)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건	30,000
8)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사. 자격시험 관련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아. 교통관계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대	1,4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1대	1,400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1)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1대	400,000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1대	10,000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1대	2,000
4)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신청	1량	2,000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200,000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5,000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1,000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신고	1량	1,000

[별표 2]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u>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u>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징수구분) ① <u>제증명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2조(징수구분) ① <u>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따라</u> 징수한다.</p>
<p>② <u>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u>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p>② <u>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u></p>
<p>③ <u>제2항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u>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 <u>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u> 수수료를 징수한다.</p>

제3조(징수방법)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생략)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 2.~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생략)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 2.~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발취

□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비고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삭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권한위임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식의약안전과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마.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같은 법 제1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마약취급자에게 발행·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등급	등급 내용	요율
1등급	1. 특별시·광역시·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 비 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